

# 바뀌는 가격 제도 알아보기

- 폐지되는 권장소비자가격, 실시되는 단위가격표시제 -



바뀌는 제도를 잘 알아두는 것도 현명한 소비 생활의 한 방법이다. 올 9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폐지되고, 단위 가격 표시가 실시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올 9월부터 바뀐 가격 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본다.

■ 정리/최재희<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폐지

권장가와 판매가 차이가 큰 품목 중심으로  
가전제품·의류 등 12개 품목 폐지

제품의 겉포장에 찍혀있던 권장소비자가격이 올 9월부터 폐지되었다. 그동안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시되었던 배경은,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유통업이 낙후되어 유통업자가 가격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비자들도 '일단 깎고 보자'는 에누리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흥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권장소비자가격이다.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면서 가격 결정권은 점차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공급 물량의 제약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격 횡포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권장소비자가격의 기능이 변질되어 제조업자가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할인율이 크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별로 싸지도 않은데, 소비자는 싸게 산 것처럼 현혹되고 결과적으로 제품을 잘못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 시민단체 등에서 지난 95년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 활동을 벌여 권장소비자가격의 폐해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올 9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그동안 권장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가 매우 커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12개 품목이 해당된다.

즉, ▲가전제품(5개 품목) : TV·VTR·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 ▲의류(4개 품목) : 운동복·신사정장·숙녀정장·아동복 ▲기타용품(3개 품목) : 롤러블레이드·운동화·러닝머신이다.

의류에서 운동복은 추리닝과 땀복에 한하고 신사정장은 콤포비류를 포함한다. 숙녀정장은 원피스·투피스·쓰리피스 등 개별 단품이 아닌 상·하 형태의 세트 상품을 말한다.

캐주얼도 정장 형태를 띤 상품은 신사·숙녀정장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동복은 유아복을 포함하되 내의류는 제외한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자가 표시하는 가격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을 찾게 되고 판매업체도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야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격 정보 사이트는 좋은 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에 들어가서 초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소비자 가격 정보'를 클릭하면 물품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서비스 부

문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소비자시대' 이번호 46~47p 참조).

## 단위가격표시제 실시

### 상품 가격을 단위당으로 알기 쉽게 표시 상품간 가격 비교 쉬워져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가격표시에 의해 가격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정보 수집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느 곳에 어느 물건이 싼지 알아두고, 신문이나 잡지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가격 정보를 수집해놓으면 상품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 폐지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상품간의 가격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단위가격표시제도는, 상품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하여 진열대나 목록에 제시하는 것으로써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쉽게 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참기름의 경우 300g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자. 이 제품의 100g당 단위 가격은 1천5백77원이고 판매가격은 4천7백30원이라는 표시를 정확히 해서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고 아울러 판매업자의 가격 표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표시 대상 품목을 정하고 단위 가격을 규정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9월, 15개 품목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10개)**: 햄류(10g)·우유(100ml)·설탕(100g)·커피(10g)·치즈(10g)·식용유(100ml)·참기름(10ml)·마요네즈(100g)·간장(100ml)·맛살(100g) **일용잡화(5개)**: 랩(m)·호일(m)·화장지(10m)·분말세제(100g)·섬유유연제(100ml) 등이다. ㉵

XXXXX  
권장소비자가격  
폐지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상품간의 가격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XXXXX